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553호
2. 제출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3. 2. 6.
4. 회부일자 : 2023. 2. 9.

II. 제안이유

-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보다 하향되었다는 평가에 따른 교육부의 권고로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학원·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 금액에 적합하도록 ‘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’을 ‘1인당 배상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’으로 함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
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4조(학원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6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4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 등)
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3. 협의 : 감사관, 민주시민생활교육과,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

4. 기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- 입법예고(2022. 10. 20. ~ 11. 9.) 결과 : 의견 없음.
- 규제심사 : 교육규제 심의결과(별첨 4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(별첨 5)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(별첨 6)
- 학생인권영향평가 :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(별첨 7)
- 관계법규 : 별첨 8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53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원·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학원·교습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‘재난안전의무보험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는 것으로,

행정안전부는 2020년 6월 9일 ‘재난안전의무보험’의 총괄·관리를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을 개정하였고¹⁾,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6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난 등으로 발생한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²⁾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~10. (생략)

10의2. “재난안전의무보험”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(共濟)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.

11~12. (생략)

제76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)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·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

2.~6. (생략)

7.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② (생략)

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4조의2(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) ① 법 제76조의2제1

- 한편 같은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을 분석·평가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·운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³⁾,

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교육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분석·평가하여 2022년 7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 기존 학원·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‘1억원 이상’에서 ‘1억 5천만원 이상’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동 조례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⁴⁾
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정부부처의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⁵⁾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에 따른 사후 보상책 마련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며, 학원·교습소 등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지도·점검 등을 통해 화재 및 차량 운행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적·적극적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

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”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.

1. 사망의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

2~3. (생략)

② (생략)

- 3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6조3(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·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의 분석·평가 결과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권고,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·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- 4)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, 학원 책임배상보험 관련 시도교육청 학원 조례 개정 권고(2022.7.1.)

- 5) 변지석(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),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추진 방향, 국회도서관, 2021.10.18.

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이 준 석 (02-2180-8263)	입법조사관	이 현 주 (02-2180-8272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